#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1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위성곤·김한규·모경종

문대림 • 민병덕 • 박희승

서영교 · 이해식 · 조인철

한준호 · 허 영 · 황정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제주특별 자치도 관할에 시·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 도록 하여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현재의 단층제 행정체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제 1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 조 및 제394조제5항 삭제 등).

#### 법률 제 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앞의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삭제한다.

제2편제1장제2절(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 2 및 제16조)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행정시가"를 "시·군이"로, "행정시 총수의"를 "시·군 총수의"로, "행정시에서"를 "시·군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정시가"를 "시·군이"로, "행정시에서"를 "시·군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시별"을 각각 "시·군별"로 한다.

제35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으로"를 ""도의회의원"으로"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중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한다)"으로 본다"를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로 본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행정시"를 "시·군"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행정시"를 각각 "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 1호 중 "행정시인사위원회"를 "시·군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 2호 중 "행정시인사위원회"를 "시·군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 5항 중 "행정시인사위원회"를 각각 "시·군인사위원회"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행정시를"을 "시·군을"로 한다.

제1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시"를 각각 "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행정시"를 각각 "시·군"으로 한다.

제39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15조제1항 중 "행정시장을"을 "시장 또는 군수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행정시장"을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군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에 둔 행정시인사위원회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군에 두는 시·군인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교육지원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에 둔 교육지원청은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군 에 두는 시·군교육지원청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u>&lt;</u> 삭 제>
제2절 행정시 및 읍・면・동의	<삭 제>
<u>설치</u>	<u> </u>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	<u>&lt;</u> 삭 제>
리·합병 등)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둔다.	
③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	
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	
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	
•합병,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	
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도의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다.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 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 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 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시장) ① 행정시에 시 〈삭 제〉 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 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 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 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

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 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 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 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 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①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지사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포
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
록하려는 사람(이하 "도지사후
보자"라 한다)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할 행정시장
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
고할 수 있다.

- ② 도지사후보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할때에 예고한 사람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 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 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 ④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사람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고 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 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 에서 퇴직한다.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 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
- 3.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 4. 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 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 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① 행정 시에 부시장을 둔다.

-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도지 사가 임명한다.
-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 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 다.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 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 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 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다.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삭 제>

<삭 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 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 축위원회
- 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 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u>따른 지방보육정</u>책위원회

제16조(읍 • 면 • 동의 폐지 • 설치 <삭 제> ·분리·합병 등) ① 행정시에 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 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 •면을 둔다.

②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 정시에 두는 읍 · 면 · 동에 적 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u>면·동을</u> 폐지하거나 설치 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

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u>행정시가</u> 3개 이상인 경우에는 <u>행정시 총수의</u> 2분의 1 이상의 <u>행정시에서</u>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다만, <u>행정시가</u> 2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u>행정시에서</u>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 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 구할 때에 <u>행정시별</u> 서명 요건 은 제2항의 도교육감에 대한 <u>행정시별</u> 서명 요건을 따른다.

④ (생 략)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저률」의 적용) 주민소환에 관하

세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① (현호	행과
같음)	
②	
<u>시·군이</u>	
시·군 총수의	
<u>시·군에서</u>	
<u>시·군이</u>	
시·군에서	
③	
시·군별	
<u>시·군별</u>	
④ (현행과 같음)	
세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
률」의 적용)	

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2. (생략)
- 3.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 와 도교육감"으로, "당해 지 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 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 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 원"은 "도의회의원"으로 본 다.
- 4. 같은 법 제2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보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보고"로, ""제7조"로"는 ""제7조제1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로"로, ""시·도지사"로"는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으

1. • 2.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1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로
본다.

로"를 ""도의회의원"으로"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 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 표의 경우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 "주민 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 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 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 한다)"으로 본다.

5. (생략)

-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 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 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 영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u>행정시</u>에 인사

5. (현행과 같음)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군
<u>.</u>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
영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
<u>ㅇ</u> )
②
<u>시·</u> 군

위원회	(이하	" <u>행정</u>	<u> 시</u> 인시	위원
회"라	한다)를	를, 교	유지원	]청에
인사위	원회(이	하 '	'교육지	원청
인사위	원회"라	한다	<b>가)를</b>	각각
둘 수	있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 항・제3항・제11항, 제8조, 제9 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 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 위원회, <u>행정시인사위원회</u>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 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 한 사항
- 2.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 위원회, <u>행정시인사위원회</u>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사무 직원에 관한 사항
- 3. ~ 5. (생략)
- ④ (생 략)

<u>시·군</u>
•
③
•
4
1
가 그 이 가 이 이 뒤
시·군인사위원회
0
2
가 그러가이이칭
<u>시 · 군인사위원회</u>
3. ~ 5.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 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⑥ ~ ⑨ (생 략)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각 <u>행정시를</u>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 ② ~ ④ (생 략)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 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 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 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u>入</u> · ·	군인사
<u>위원회</u>	
<u>\]</u>	<u>· 군인</u>
사위원회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u>시·군을</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
자가 소유하고 있는 <u>행정시</u> 별
동지역(동지역으로 보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하
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합
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
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u>행정시</u> 별 읍
• 면지역(동지역에 있는 지역
으로서 동지역에 적용하는 것
이 부적합하다고 도조례로 정
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종합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
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
항제4호에 따라 도조례로 정
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
다.

2.	. 1	별도	합(	산과	세디	개싱	-: ·	납세	의	무
	자	가	소유	우하	는	행 2	정ス	]별	동	기
	역	에	있	느	별도	근 합	산	과세	대	상
	(ه	도	는	토/	지의	] フ	·} 안	을	모	두
	합	하	금 약	백을	각	각	과	세표	준	액

1.		
		<u>시·군</u>
		· 군
	<u></u>	<u></u>
2.		
	<u>\</u> \]•	<u> </u>

으로, <u>행정시</u>별 읍·면지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 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항제4호에 따라 도조 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 (생 략)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 도 불구하고 <u>행정시</u>의 동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하고, <u>행정시</u>의 읍·면지역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군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면허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⑤ (생략)

- 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 저 례) ① ~ ④ (생 략)
  - ⑤ 「수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7호 중 "둘 이상

<u>시·</u> 世
<b>_</b> _
③ (현행과 같음)
4
,] ¬
<u>시·</u> 군
시 • 군
<u>/  * L</u>
⑤ (현행과 같음)
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
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u>&lt;</u> 삭 제>

- 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 의 행정시"로 한다.
- ⑥ (생략)

제415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저

- ① 「도시개발법」 제11조제1 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 치도의 경우에는 <u>행정시장을</u>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 ②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u>행정시장</u>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 ③ ④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15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①
시장 또는
군수를
②
시장 <u>또는</u>
<u> 군수</u>
③ · ④ (현행과 같음)